

브라운스톤 더 프라임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

■ 인지세 납부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 계약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.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(2021.01.부터 시행) 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이점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납부대상 * 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▶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
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

■ 인지세 납부기한

▶ 납부일 및 기한 분양계약 체결일 /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(계약서를 작성 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.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

▶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에서 구입
▶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보관


■ 인지세 납부액 및 가산세 안내

구분	인지세 세액	
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)	1,000만원~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~5,000만원	3만원
	5,000만원 ~ 1억원	7만원
	1억원 ~ 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
구분	인지세 세액	가산 세액
계약일 이후	3개월 이내	납부 세액의 100% 가산
경과에 따른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납부 세액의 200% 가산
가산세액 비율	6개월 초과	납부 세액의 300% 가산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


① www.e-revenuestamp.or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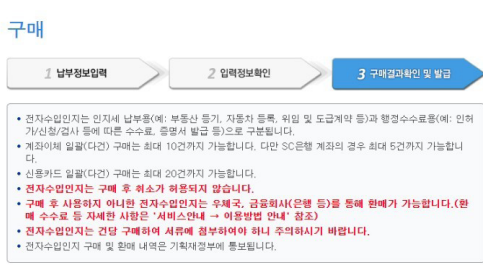
② 로그인_비회원 구매 가능



③ 수입인지 구매하기_납부정보 입력



④ 출력



-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(예: 부동산 등기, 자동차 등록, 위임 및 도급계약 등)과 행정수수료용(예: 인허가 신청/영사 등에 따른 수수료, 증명서 발급 등)으로 구분됩니다.
- 계약이체 일괄(다건) 구매는 최대 10건까지 가능합니다. 다만 SC은행 계좌의 경우 최대 5건까지 가능합니다.
- 신용카드 일괄(다건) 구매는 최대 20건까지 가능합니다.
-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구매 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, 금융회사(은행 등)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.(환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'서비스안내 -> 이용방법 안내' 참조)
- 전자수입인지는 건당 구매하여 세금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위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환매 내역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됩니다.

※ 견본주택 방문시 전자수입인지를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.
※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구입하셔합니다.

전화문의 1800-8887

시행 : 롯데우림아파트주택재건축특비사업조합

사업대행 : 한국토지신탁

시공 : ISU 이수건설